

# 서울가정법원

## 제 2 부

## 판 결

사 건 2014르30\*\*\*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 A (77\*\*\*\*-2\*\*\*\*\*)  
피고, 피항소인 B (50\*\*\*\*-2\*\*\*\*\*)  
제 1 심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8. 20. 선고 2013드단3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C(45\*\*\*\*-1\*\*\*\*\*, 등록기준지 : 서울 \*구 \*\*로2가 23) 사이에 2012. 10. 8. 서울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갑 제12, 13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는 당심 계속 중인 2014. 10. 20.경에 원고가 망인의 친구 D, 망인의 지인 E와 통화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혼인의사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병원 의사 F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인구

              판사      신순영

              판사      전경태